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. 12. 20 선고 2022가단135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2. 2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공유자 지분 446분의 116 중 2/13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2항, 제3항, 제4항 기재 부동산 전체 지분 중 2/13지분에 관하여 2022. 7. 17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각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공유자 지분 446분의 116 중 2/13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2항, 제3항, 제4항 기재 부동산 전체 지분 중 2/13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2. 8. 2. 접수 제17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 함철환

별지